```
제정 1998. 6. 26 훈령 제 53호
   개정 1998. 10. 17 훈령 제 5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               훈령 제 65호
      1999. 2. 26
                훈령 제 86호(행정기구관련규정)
      2000. 4. 6
      2004. 2. 27
                훈령 제164호
                훈령 제196호(법제사무 처리 규정)
      2005. 10. 5
      2006. 5. 10
                훈령 제235호
      2010. 11. 30
                훈령 제304호
일부개정 2013. 6.12
                훈령 제350호
전부개정 2014. 6.30
                훈령 제369호
일부개정 2014. 10. 8
                훈령 제373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일부개정 2016. 10. 12
                훈령 제405호
일부개정 2017. 10. 2
                규칙 제8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7. 11. 6 훈령 제422호
일부개정 2019. 6. 14 훈령 제450호(조직개편에 따른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
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
전부개정 2020. 3. 2 훈령 제469호(전부개정)
```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용인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. 다만, 수 행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
 - 2. 외국정부 및 기관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
 - 3.「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」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
 - 4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일정 기간 국외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
- 제3조(허가권자)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조(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및 사전심사) 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는 공무원(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 또는 공무국외출장 추진 부서의 장(이하 "신청자"라 한다)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

- 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소관부서(이하 "소관부서"라 한다)의 장에게 공 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공무국외출장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
- 2.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장 검토 및 소관부서 사전심사(별지 제2호서식)
- 3. 국외출장경력서(별지 제3호서식)
- 4. 공무국외출장자서약서(별지 제4호서식)
- 5.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
- 6. 항공운임증명서
- 7.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
- ②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국외시찰·선진견학·참관·자료수집·포상·격려 등 국외 업무연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앞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심사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-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소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
- 제5조(공무국외출장 허가)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,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,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.
 -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제6조(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 및 제한)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출장자, 출장 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허가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은 사업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허가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국가에 재난·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, 환율급등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출장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지출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(감사)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대한 모니터 링을 수시로 실시하거나 정기감사 등에 포함하여 감사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9조(심사대상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.
 - 1. 시 소속 공무원이 15일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
 - 2.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 하는 경우. 이 경우 10명 이상 단체의 범위에는 유관기관단체,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.
 - 3.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, 단체(개인을 포함한다)가 부담하는 경우
 - 4. 국외출장의 목적이 양해각서(MOU)체결인 경우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의뢰한 경우
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 - 1. 감사, 인사,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장
 -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공무국외여행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
 - 나. 시민·사회단체, 기관,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다. 그 밖에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
-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담당 실·국장이 된다.
- 제11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- 제12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 - 2. 위원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제13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위원의 직무대만,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 중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 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.
- 제15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나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정할 수 있다.
- 제1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공무국 외출장 팀장이 된다.
- 제17조(소양교육) 소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장자 수칙, 보안서약, 직무상 보안유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. 다만, 소관부서의 장은 출 장자의 경력,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8조(현지활동 등) ① 공무국외출장자(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,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-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, 현지의 규범·관습·공중도덕 등을 지키며,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9조(귀국보고서의 등록)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 한 후 귀국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귀국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관부서의 장이 국가기 밀의 보호,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0조(사후관리 등)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 - ②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소속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귀국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,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부칙〈2020. 3. 2 훈령 제469호 전부개정〉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(제5조제2항 관련)

1. 출장의 필요성

-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 은 출장은 자제하고,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
-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하면 이를 통합·단일화하고 출장목 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
 - ※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,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·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

2.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

-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·기관으로 제한
 - 중복·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
 - ※ 방문국·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 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

3. 출장자의 적합성

-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,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
-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
 -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

※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(예시) : 감독 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·자회사, 용역·물품·공사 계약업체, 연구비·보조금 지원기관, 지도·단속 및 감리 대상업체, 공무 수탁기관 등

4.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

-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
- 방문국의 관습·공휴일 등을 감안, 적절한 시기를 선택
 - ※ 휴가철·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

5. 출장경비의 적정성

- 「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」에 따른 출장경비 산출·지급 여부
-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의 정 당성 여부, 항공료·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
 -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 기관에 비용전가 금지
 - ※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
-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과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여비의 이해관계자가 부담 여부
 - ※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「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」에서 정한 범위의 항공운임과 숙박비에 한정함

[별지 제1호서식]

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서

1. 출장계획 개요

출 장 구 분								
출 장 목 적								
출 장 동 기								
및								
배 경								
출 장 기 간			~			. (일간)
출 장 국								
출 장 경 비		(ネ フ ゚. フ	4u) Hrləl	ਿਹੀ ਸੀ ਸਿ	-L-11 61	0 7] -j) 중]. /	
부담 기관		(물생각	병비 부담기	世皇 子	김내역	豆 /	[세임]	
출장자(계:	명) 및	경비(총액:			2	천원) 내	역
성 명	23.29	در در	, ,	p) =1 61 /	-1 -1		출 장 7	형 비
한 글 영 문	성별	연령	_ 소속 	및 직위((식급)		(천	원)

2. 출장세부계획

가. 출장목적

(1)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

0

 \circ

(2)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(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)

출 장	자	세 부 수 행 내 용	비고
직 위(급)	성명	게 구 구 왕 대 중	비끄

	(3)	출장함으로	얻게	됨	효고
--	-----	-------	----	---	----

0

0

(4) 기관 방문 협의 사항

방문일자	장 소 (기관명, 주소)	면담자 (성명, 직책, 이메일)	내 용

나. 출장일정

월 일 (시 간)	출 발 지	도 착 지	방문기관명	업무수행내용

다. 출장경비 산출내역

(단위 : USD)

<u>ئ</u> ا	며 게 참.고ㅇ		차.고 ㅇ o)	체 재 비		준비금	교육비	기타			
성	명	계	항공운임	일	비	식 1]	숙박비	군미급	파귝미	기 타

[별지 제2호서식]

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장 검토 및 소관부서 사전심사

구분	세부검토사항	주관부서장 검토	소관부서 사전심사	
下正	세구심도사성	신청내용	적정 여부	적정 여부
	필 요 성			
출장목적	사 전 정 보 수 집 여 부			
기간	출장기간(일수)			
및 시 기	출 장 시 기			
	출장자의 적격성 (해당업무관련)			
출 장 자	출 장 인 원 의 적 정 성			
	개인별 업무분장 (2 명 이 상)			
	출장국가의 수			
방 문 지	방문국가(기관) 적 합 여 부			
	경 비 부 담 기 관			
경 비	항 공 료 (좌석등급, 할인여부)			
^3	체 재 비			
	기 타 경 비 (철도 및 선박)			
해당부서 검토의견				
소관부서 검토의견				
최종결과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국 외 출 장 경 력 서

○ 주 소:

○ 성 명:

○ 생 년 월 일 :

국외출장경력 (2006. 3. 1. 이후)

출 장 기 간	소속부서	직위(급)	출	장	목	적	출장국명

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
년 월 일

직위(급) (인)

신원특이 및 인사기록 확인필 직 인사팀장 성명 (인)

[별지 제4호서식]

공 무 국 외 출 장 자 서 약 서

- 1.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.
-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.
- 3.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, 귀국 후 결과보고 시 귀 국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.
- 4.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,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.
- 5. 출장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,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.
- 6.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(미국화폐 100 달러 또는 10만원 이상)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.

□ 제도 개요

- 근 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조,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부터 제30조까지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 포함)
- 대상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 포함)으로부터 받 은 선물
- 신고기준액 :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

□ 신고요령(절차)

- 선물받은 공직자 : 지체 없이 선물수령 신고서(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)에 따라 감사관에 신고
- 감사관 :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분권과에 이관
- 자치분권과 :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- □ 선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 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또는 정계 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: 감사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
- 7.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 도 공여하지 않는다.

직위(급) 성명 (인)

년

월

일

[별지 제5호서식]

항공운임 지급 신청서

소 속					급 위)				성 명				
출 장	일	시	년	월	일	~	년		월 일				
(부임) 일 정	출장(부	임)지											
	일자틱	且	출발지	도착지		항공	사	좌	-석등급	į	7 액		
항공													
운임													
				합	계								
		보유	사용 1	내역(B)	내역(B) <u>잔</u> 여 사-					사용하지 못한 사유			
	일자별	리시 기서하면		좌석승급		마일 리지	마일리 [*] 지부족		보너스 좌석	승급	기타		
공무		(A)	7772		(C	C=A-B)			없음	불가			
항공 마일													
리지													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2조 및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의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
붙임	: 관련	증명지	·료 1부										
	년 월 일												
				신 청 인		성 명				(인)			

「별지 제6호서식〕

공무국외출장보고서

- I. 출장개요
- 목적
- 기간
-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
- 출장자 인적사항
- Ⅱ. 출장내용
- 주요 활동 내용
- ※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
- Ⅲ. 시사적 및 특이사항
- 시사점
- 특이사항
- Ⅳ. 붙임자료
 - 공무국외출장 계획서
 -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·회의 장면 사진 등